제277회(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2009년 1월 23일 (금)

## 심 사 보 고 서

## O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begin{aligned}
& \text { 충 청 북 도 의 회 } \\
& \text { 교육사회위원회 }
\end{aligned}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1． 23.
교육사회위원회

## I．심사경과

가．제출일자 및 제출자 ：2009년 1월 5일
충청북도교육감
나．회 부 일 자：2009년 1월 6일
다．상정 및 의결일자
○ 2009．1． 15 제27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질의 • 토론，심사의결（수정가결）

## ㅍ．제안설명 요지 <br> （제안설명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 가．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8．4．18．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 고，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

## 나．주요내용

가．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중『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공정이 50퍼센트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 물＂의 확정 사항 삭제（안 제6조제1항제2호）

○ 관계 법령 개정（2008．4．18．）으로 건설을 위하여 지급한 기성대 가에 해당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없이 공유재산에 편입

나．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및 대부요율 산정 시 제한규정 삭제（안 제30조제3항제5호）
○ 주거용 건물의 기준에서 「건축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는 내용을 삭제

다．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 대비 100 분의 10 이상 증가 시 감액하는 비율을 확대（안 제36조）

○ 전년도 사용료 및 대부료가 100 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증가 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을 경작용 100 분의 50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 100 분의 45 ，기타의 경우 100 분의 40 에서 100 분의 70 으로 일괄 변경

라．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변경（안 제41조제3호）

○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 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 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를 1989 년 1월 24 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 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변경

마．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가 가능한 재산의 범 위 보완（안 제35조제1항）

바．기타 인용법률 및 직제개정으로 보완
（안 제5조제 1 항제 3 호），（안 제6조제2항제2호），（안 제29조 제2호），（안 제33조제2항），（안 제34조제1항제1호），（안 제 34조제3항），（안 제41조제3호），（안 제47조）．

사．다른 조례의 개정（안 부칙 제2조）
○「충청북도 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외 2건（2008．9．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명칭 등 변경）

## III．검토보고 요지

## （교육사회전문위원 윤양한）

○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가．공유제산심의회 심의사항 삭제（안 제 6 조제 1 항제 2 호）

－2007회계연도부터 도입된 복식부기 회계제도로 인해 기성대가 를 지급한 건물이나 시설물의 공유재산심의회의 행정재산 확정 절차가 불필요하고 이를 반영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령』제 3 조의 개정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에서 삭제하게 된 것임．

## 나．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및 대부요율 산정 시 제한규정 삭제（안 제 30 조제 3 항제 5 호）

O 현행 대부료는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중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1천분의 25 이상）과 무허가 건물（1천분의 50 이상）에 대 해 차둥 부과되고 있는 바『국유재산법 시행령』제26조는 무 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고 있어 국유재산 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준공인가를 필 한 건물과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다．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 대비 100 분의 10 이상 증가 시 감액하는 비율을 확대（안 제3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6조 및 제34조의 개정으 로 대부료 및 사용료가 전년대비 $10 \%$ 이상 증가한 경우 감액률 이 종전 $50 \%$ 에서 $70 \%$ 로 확대됨에 따라 용도별로 차등하여 적용 하던 감액률을 일괄하여 $70 \%$ 로 조정함．

라．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변경（안 제41조제3호）

○ 2008년도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재정경제부）의 제7조 제 2항（보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재산의 매각기준）에 따르면 1989년 1월 24일 이전을 기준시점으로 정하고 있어 국유재산 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공유재산의 매각시점을 1989년 1월 24일 이전으로 변경함

마．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밎 대부가 가능한 재산 의 범위보완（안 제35조제1항）
$\bigcirc$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종류를 신설．

## 바．기타 인용법률 및 직제개정 사항 반영

○ 도 교육청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보완하였음．

## O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령 개정내용 반영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며，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법령용어를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개정안의 부칙 제2조에서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및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의 직제규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는 것은 본 조례와의 연관성이 없으므로 관련조례의 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IV．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V．토론요지 ：＂생략＂

## VI．수정안 요지

## 가．수정이유

○ 안 부칙 제 2 조제 1 항부터 제 2 조제 3 항에서『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 회 설치조례』，『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 에 관한조례』，『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의

2008년 9월 1일자 충청북도교육청의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본 조례안과 상호 연관성이 없 고 부칙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경우인 "어느 조례의 제 정• 개정•폐지에 따라 부수적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의 개정필요성이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어 한계를 벗어난 개정임으로 본 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자 함.

나. 수정주요내용
○ 안 부칙 제 2 조(다른 조례의 개정)를 삭제함.
VII. 심사결과 : 수정가결
VIII. 소수의견요지 : 없음

##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O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2009．1． 15.<br>제 안 자 ：이종호 의원 외

## 수정이유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제1항부터 제2 조제3항에서『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충청북도교육위원 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충청북도 지방교육재 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의 충청북도교육청의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명 칭 등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본 조례안과 상호연관성이 없고 개정필 요성이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어 본 개정조례안 부칙2조를 삭제하고자 함．

## 수정주요내용

1．안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를 삭제함．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제 2 조(다른 조례의 개정)를 삭제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제산 관리조례 <br>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 1 장（제 1 조부터 제 9 조까지，제 12 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본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18 조에 따라 충청북도 （이하＂도＂라 한다）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을 말한다．

2．＂제1관서＂란 본청의 소속교육기관（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교육연수 －수련기관，도서관과 교직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이하 같다）중 교육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3．＂교육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 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을 말한다．

4．＂제2관서＂란 교육청의 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중학교，기술학교，공

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 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직원 • 학생복지후생 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이란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1)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 다)은 해당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관서의 장에게, 교육청과 제2관서 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3)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위임 받은 사무 중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 산에 관한 사무를 해당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4)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재산관리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 음할 수 있다.

제4조(위임사무) (1) 교육감이 제3조제2항에 따라 교육장과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 1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와 사용•수익 허가
나. 해당 관서에 속하는 잡종재산의 관리와 대부
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처분•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나.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용도변경•폐지
다.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잡종재산의 매각•교환•양여 - 대부• 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현물출자

라. 교육청의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와 사용•수익 허가 마. 교육청과 제 2 관서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3. 교육장이 제 2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와 사용•수익 허가
나. 해당 관서에 속하는 잡종재산의 관리와 대부(페교재산의 대부는 제외)

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처분•용도변경 또는 용도페지
(2) 제 1 항의 위임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16 조에 따른 본청과 제 1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청에 다음과 같이 충청북도교육청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심의회의 위원은 부교육감과 각 국•과장(과장급 이상 담당관 포함) 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2.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이 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무과 재산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2)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교육청에서는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4. 심의회의 위원은 교육장과 각 과장(단, 청주교육청은 각 국장) 및 각 업무담당주사, 각 업무담당장학사(단, 청주교육청은 각 과장)를 당연 직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5. 심의회의 위원장은 교육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과장(단, 청주교육 청은 관리국장)이 된다.
6.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리과 재산업무담당주사(단, 청주교육 청은 재무과 재산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의 사무를 처리한다.
7.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1)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 - 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 - 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4.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 1 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 처분

2．「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시의 동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 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나．시•군의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 천만원 이하의 재산

제 7 조（공유재산 관리대장）재산관리관은 영 제 49 조제 1 항에 따라 공유재산 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 하여 관리하여야 하며，그 서식과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영 제5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1）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 여 매년 1 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제 1 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전대（轉貸）또는 권리처분 여부
4．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원상변경 여부
6．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그 밖의 필요한 사항
(3)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과 대부시에 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4) 제 1 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 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 12 조(사용 - 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1)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와 대부료(연체료

- 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장(제 13 조부터 제 15 조까지, 제 17 조부터 제 18 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 - 처분

제 13 조(공유재산 관리계획) (1) 법 제 10 조 및 영 제 7 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 리계획은 교육감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 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 을 편성하기 전까지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 14 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 관리) (1)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 천 등)으로 취득 (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재산관리관은 제 1 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 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로된 때에는 제 7 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 15 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 13 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17 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1)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 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2) 제 1 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 에 필요한 인근 토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 18 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 17 조에 따라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 일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3장(제 19 조부터 제 22 조까지, 제 24 조부터 제 25 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제 19 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 여야 한다.

제20조(사용 • 수익허가의 제한) (1) 행정재산 • 보존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 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2) 행정재산•보존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 - 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도페지 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1조(사용 • 수익허가) 행정재산 • 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 - 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 - 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8.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22 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 • 수익허가) (1) 행정재산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인이나 단체 에게 일시 사용 • 수익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저촉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2) 제 1 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별표에서 정한 시설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시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실 제 소요경비는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4) 국가•지방자치단체 • 산업체 • 국가인증시험기관 등에서 연수•시험 등의 목적으로 전체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5) 1 개월 이상의 장기 사용 시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로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6)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충청북도교육청과 산하 각급기관(교육행정기 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2.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활동, 그 밖에 공공목적 등 건전한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로써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 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 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 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5.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 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8)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 - 수익을 허가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받 은 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6.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 는 허가받은 자가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시설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나 손해에 대하여는 허가반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재산관리관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 24 조(행정 • 보존재산의 위탁 관리) (1)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 1 항에 따라 행정 - 보존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 조제1항에 따라 사용 - 수익 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로

-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재산관리관은 제 1 항에 따라 행정 - 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 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 14 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 여야 한다.
(3) 제 1 항에 따라 행정 • 보존재산을 위탁 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 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반은 자에게 부과•징 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 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4) 법 제 27 조제 2 항에 따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 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과

영 제 21 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 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로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6)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 하는 시설보수는 교육감이 직접 시행한다.

제25조(잡종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 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6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제1절(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잡종재산
제1절 대부

제 26 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 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 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7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1)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 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 1 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 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 은 국가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 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 28 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영 제 9 조제 4 호，제 23 조，제 29 조제 1 항제 7 호， 제 30 조，제 32 조제 3 항，제 35 조제 2 항，제 38 조제 1 항 제 25 호，제 39 조제 2 항 제 5 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 진 법」을 준용한다．

제29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제28조에 따른 외국인투 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 외국인투 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 • 매 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4 제 2 항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나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 른 일 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 단지와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아 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외국인투자촉진법」 제 18 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30조(대부료의 요율) (1)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 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로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 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 적으로 하는 재산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 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3. 공용 - 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4.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5. 교육감이 교육행정목적, 교육지원사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되는 경우
6. 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 아 사용되는 재산
7.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요율은 연 1천분의 25 이상 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 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 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 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목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교육기본법」 제 11 조에 따라 도가 설립•경영하는 도립학교의 학 교급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4．영 제 29 조제 1 항제 7 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 자가 대부하는 경우
6．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 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7．「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의 인 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 14 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8．종업원 50 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 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5）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교육감은 연간 대부료나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 천분의 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6）「페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 천분의 10 이상으 로 한다．

제32조（토석채취료 등）（1）제30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나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

의 원석의 입방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 으로 한다.
(2) 제 1 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입방미터 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 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3)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 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제 3 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 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 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 려하여 1 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 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 (1) 제30조에 따른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2) 제 1 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 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현재의 건 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 야 한다.
(3)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 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 층은 부지평가액의 3 분의 2
나. 2 층은 부지평가액의 2 분의 1
2. 지상 3 층 이상의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 층은 부지평가액의 2 분의 1
나. 2 층은 부지평가액의 3 분의 1
다. 3 층은 부지평가액의 4 분의 1
라. 4 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 분의 1
3. 지상 1 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 층은 부지평가액의 3 분의 1
나. 지하 2 층은 부지평가액의 4 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 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 층은 부지평가액의 2 분의 1
나. 지하 2 층은 부지평가액의 3 분의 1
다. 지하 3 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 분의 1
(4) 제3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결정하는 건물과 부지의 대부면 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 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 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 받 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 당 층의 총면적)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
\times \frac{\text { 사용하는 면적 }}{\text { 공용으로 } \text { 사용하는 } \text { 자들이 전용 }}
$$

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
(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 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 당 층의 총면적)
（5）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 적을 산출할 수 있다．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 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로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1）「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과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 용 • 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나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대부료 등＂ 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로 등을 전액 감 면할 수 있다．

가．「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 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 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 명 이상인 사업
라．전체생산량의 50 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과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 퍼센트인 사업

마．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 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 일 평균 고용 인원이 200 명 이상 300 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 • 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 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 퍼센트 미 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 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 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 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 명 이상 200 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 - 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 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제 29 조제 1 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대 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 여야 한다．

1．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1 천분의 500

2．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1 천분의 300
（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 46 조제 1 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43 조제 4 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 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중앙행정기관： 100 분의 80
2．그 밖의 공공기관： 100 분의 50
제35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1）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1．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 공공시설물로서 활 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그 밖에 상기 각 호에 준하는 재산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2）전세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의 1 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로•대부로에 상당하는 금액 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3)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할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 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4)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충청북도교육 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 36 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 16 조 및 영 제 34 조에 따라 해당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로나 대부료보다 100 분의 10 이 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 분의 70 으로 한다.

제37조(대부료 등의 납기) (1) 제3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나 사용료 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 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 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 일 까지로 하며, 1 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 로부터 30 일 이전으로 한다.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 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대부정리부의 비치) (1)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2) 제 1 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대부계약 연월일
3．대부받은 자의 주소，성명
4．대부기간
5．재산가격
6．대부요율
7．대부로
8．대부료 납입기일
9．계약 갱신내용
10．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4장제2절（제 40 조부터 제 41 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매각

제 40 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1）영 제 39 조제 1 항에 따라 잡종재산의 매 각대금을 10 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 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 을 매각하는 때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 택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 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영세농가나 저소 득층에게 400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2）영 제 39 조제 1 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 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 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 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3）영 제 39 조제 1 항에 따라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 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 제 38 조제 1 항제 6 호，제 7 호 및 제 12 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교육감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교육감이 계속하여 점 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 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때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 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 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 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5) 영 제39조제 2 항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와 제 6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 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 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 의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 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 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 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 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지 역에서는 2천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 일 이전부터 지방자 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 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 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 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 천제곱미터 또는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 된 부분에 한정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 할 수 있으며, 매 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 지까지 일괄매각 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 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시의 동지역에 서는 500 제곱미터 이하, 시 • 군의 읍 - 면지역 1 천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 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4장제3절(제42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절 신탁

제 42 조 (신탁의 종류) 영 제 48 조제 1 항에 따라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 - 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 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5장제 44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장 공유임야 관리

제 44 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과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 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6장(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청사관리

제46조 (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1) 교육감은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및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청사신축계획서 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 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7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 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8조(청사의 설계)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둥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 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 - 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과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 - 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제7장(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관사관리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교육감 • 부교육감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란 교육감 관사를 말한다.
2. "2급 관사"란 부교육감 관사, 교육장 관사와 이에 준하는 관사를 말 한다.
3. "3급 관사"란 1 급 $\cdot 2$ 급 관사 이외의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한 관사를 말한다.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 급 $\cdot 2$ 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 한다.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과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과 회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의 성실 한 납부
5. 보일러, 전열기구, 가스통, 가스렌지 등 직접 사용 관리하는 시설이 나 기구에 대한 사용상의 안전관리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해당 기관의 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 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2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 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 요가 있는 때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과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 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 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응접셋트, 커텐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보 일러운영비, 취사용 가스 사용료,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아 파트 관사의 공동관리비(1급, 2 급 관사에 한정함)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소속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3.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5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인계 인수 등) (1) 제54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2) 제 1 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 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 야 하며, 다음 사용자나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와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 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장 보칙

제 61 조(변상금의 부과) (1) 영 제 81 조제 1 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 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 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제 1 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 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2조(변상금의 분할납부) (1) 영 제81조제 1 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 만원 이상: 6 개월 2 회 분납
2. 100 만원 이상: 1 년 4 회 분납
3. 200 만원 이상: 2 년 분납
4. 300 만원 이상: 3 년 분납
(2)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 1 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1)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 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 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 만원을 한 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 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하거나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 1 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 별로 300 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 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2)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 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 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 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3)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 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합필의 신청)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 한 토지나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 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과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 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개정 규정 에 따른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산정•부 과하는 대부료 및 사용로부터 적용한다.
[별표]

>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제22조제2항 관련)

| 지역별 | 시 설 별 |  |  |  |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2시간까지 | 2시간초과 <br> 4시간이하 | 4시간초과 |  |
| 시지역 | 보통교실 |  | 5,000원 | 10,000원 | 15,000원 | 1실 당 |
|  | $\begin{aligned} & \text { 체육 관 } \\ & \text { (강당) } \end{aligned}$ | 일시사용 | 25,000 원 | 50,000원 | 100,000 원 | 일시수용 <br> 가능 인원 <br> 범위 내 |
|  |  | 1 개월 이상 수시 사용 | 시간당 5,000 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  |  |  |
|  | 운동장 | 일시사용 | 25,000원 | 50,000원 | 100,000원 | 일시수용 <br> 가능 인원 <br> 범위 내 |
|  |  | 1 개월 이상 수시 사용 | 시간당 3,000 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  |  |  |
| $\begin{gathered} \text { 군지역 } \\ \text { (시지역의 } \\ \text { 읍•면 } \\ \text { 포함) } \end{gathered}$ | 보통교실 |  | 2,500원 | 5,000원 | 10,000원 | 1실 당 |
|  | 체육과 | 일시사융 | 15,000 원 | 30,000원 | 60,000원 | 일시수융 |
|  | (강당) | 1 개월 이상 수시 사용 | 시간당 3,000 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  |  | 범위 내 |
|  | 운동장 | 일 시 | 15,000 원 | 30,000원 | 60,000원 | 일시수용 <br> 가능 인원 <br> 범위 내 |
|  |  | 1 개월 이상 수시 사용 | 시간당 2,000 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  |  |  |
| 기 타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 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  |  |  |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헹 |
| :---: |
| 제 1 장 총 칙 |
| 제1조（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이하＂ |
| 도＂라 한다）의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 | 유재산（이하＂공유재산＂이라 한다）보 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 2 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본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률」 제 18 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을 말한다．

2．제 1 관서 ：본청의 소속교육기관（고등 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헹정기관，교 육연구기관，교육연수•수련기관，도서 관과 교직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이하 같다）중 교육청과 제 2관 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3．교육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률」제 34 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

## 개 정 안 <br>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비특 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 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본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18 조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 기관 및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을 말한 다．
2．＂제1관서＂란 본청의 소속교육기관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헹정기 관，교육연구기관，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과 교직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이하 같다）중 교육청과 제 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3．＂교육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 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

| 현 헹 개 정 안 |
| :---: | :---: |

정기관인 교육청을 말한다.
4. 제2관서: 교육청의 소속 교육기관 (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고,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헹정기관, 교육연구기 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직 원 - 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을 말한다.
5. 관서의 장: 제 1 관서와 제 2 관서의 장 을 말한다.

제 3 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1)충청북 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당해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 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 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당해 관서의 장에게,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 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당해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3)교육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임 받은 사무중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 재산에 관한 사무를 당해 관서의 장에 게 위임한다.
(4)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재산관리공

기관인 교육청을 말한다.
4. "제2관서"란 교육청의 소속 교육기 관(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 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 는 각종학교 및 교육혱정기관, 교육연 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직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이란 제 1 관서와 제 2 관서 의 장을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1) 충청 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해당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 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에 속하 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관서 의 장에게, 교육청과 제 2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교육장에 게 위임한다.
(3)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위임 받은 사무 중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해당 관서의 장에게 위임 한다.
(4)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 2 항과 제 3 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재산관리공무원 (이

| 헌 헹 | 개 정 안 |
| :---: | :---: |

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씨 이에 갈음 할 수 있다.

제4조(위임사무) (1)교육감이 제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 및 관서의 장 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제 1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당해 관서에 속하는 헹정재산•보 존저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나. 당해 관서에 속하는 잡종재산의 관 리 및 대부

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처분 •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 산의 취득
나.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행정재 산 - 보존재산의 용도변경 - 폐지

다.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잡종재 산의 매각, 교환, 양여, 대부, 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현물 출자
라. 교육청의 헹정재산 - 보존재산의 관 리와 사용 - 수익허가
마. 교육청과 제2관서의 공유재산에 관 한 사무의 지도•감독

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위임 사무) (1) 교육감이 제3조제2 항에 따라 교육장과 관서의 장에게 위 임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 1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헹정재산 - 보존 재산의 관리와 사용 - 수익허가 나. 해당 관서에 속하는 잡종재산의 관 릐와 대부

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처분 - 용도변경 또는 용도페지
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 산의 취득

나. 교육청과 제 2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 산 - 보존재산의 용도변경 - 폐지 다.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잡종재 산의 매각•교환•양여•대부 - 사 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현물출자
라. 교육청의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 리와 사용 - 수익허가

마. 교육청과 제2관서의 공유재산에 관 한 사무의 지도•감독

| 헌 헹 | 개 정 안 |
| :---: | :---: |

3．교육장이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 는 사무

가．당해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보 존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나．당해 관서에 속하는 잡종재산의 관리 및 대부（폐교재산의 대부는 제외）

다．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처분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2）제1항 규정의 위임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1）「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법＂이라 한 다）제 16 조의 규정에 의한 본청과 제 1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 하기 위하여 본청에 다음과 같이 충청 북도교육청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 회＂라 한다）를 둔다．

1．심의회의 위원은 부교육감과 각 국 －과장（과장급 이상 담당관 포함）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2．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이 된다．

3．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 운영지원과 세입관재담당사무관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

3．교육장이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 는 사무

가．해당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보 존재산의 관리와 사용•수익허가 나．해당 관서에 속하는 잡종재산의 관리 와 대부（폐교재산의 대부는 제외）

다．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처분 •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2）제 1 항의 위임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1）「공 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법＂이 라 한다）제 16 조에 따른 본청과 제 1 관 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 하기 위하여 본청에 다음과 같이 충청 북도교육청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 회＂라 한다）를 둔다．

1．심의회의 위원은 부교육감과 각 국 －과장（과장급 이상 담당관 포함）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2．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이 된다．

3．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무 과 재산업무담당사뭄관이 되고 위 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 현 헹 개 정 안 |
| :---: | :---: |

무를 처리한다.
(2)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 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 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4)교육청에서는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 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장 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1. 심의회의 위원은 교육장과 각 과장 (단, 청주교육청은 각 국장) 및 각 업 무담당주사, 각 업무담당 장학시 단 청주교육청은 각 과장)를 당연직 위 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2. 심의회의 위원장은 교육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과장(단, 청주교육 청은 관리국장)이 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리 과 재산업무 담당주사(단, 청주교육 청은 재무과 재산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 무를 처리한다.
4.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처리한다.
(2)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 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 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

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4) 교육청에서는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 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이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1. 심의회의 위원은 교육장과 각 과장 (단, 청주교육청은 각 국장) 및 각 업 무담당주사, 각 업무담당장학사 단 청주교육청은 각 과장)를 당연직 위 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2. 심의회의 위원장은 교육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과장 (단, 청주교육 청은 관리국장)이 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리 과 재산업무담당주사(단, 청주교육 청은 재무과 재산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4.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현 헹 |
| :---: |
| 가.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 |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 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나. 시•군의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 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제 7 조(공유재산 관리 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 49 조제 1 항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 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 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 (1)재산관리관은 법 제 44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 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 전을 기하여야 한다.
(2)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 - 대부료 수납여부

가.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 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나. 시•군의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 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제 7 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 은 영 제 49 조제 1 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 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 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 고서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 (1) 재산관리관은 법 제 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 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 - 대부로 수납여부

| 헌 헹 개 정 안 |
| :---: | :---: |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 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3)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 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 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야 한다.
8.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 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9.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 업 구역내의 재산
10.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11.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12.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4)제 1 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 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13. 전대(轉貸) 또는 권리처분 여부
1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 고 있는지의 여부
15. 원상변경 여부
16.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 부
1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3)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 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 며, 재산매각과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야 한다.
18.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 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19.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재산
20.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21.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22.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4) 제 1 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 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 헌 헹 | 개 정 안 |
| :---: | :---: |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 12 조(사용 - 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 용) (1)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때 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 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2)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 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 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 여야 한다.

## 제 2 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 13 조(공유재산 관리계획) (1)법 제 10 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교육감이 다음연도 예산편 성 전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 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 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 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 지 교육위원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2)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 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 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 용) (1)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 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 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2)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 관리비는 사용료와 대부료(연체료•변 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 여야 한다.

##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 13 조(공유재산 관리계획) (1) 법 제 10 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은 교육감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 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교육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공유재산관리계 획의 작성은 재산관 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 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현 헹 | 개 정 안 |
| :---: | :---: |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1)공유재산 관리계 획 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 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 (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 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재산관리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 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 1 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 15 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 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17 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1)공유 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 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2)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 요한 인근 토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 관리) (1) 공유재산 관리계 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볍령에 따 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 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 야 한다.
(3)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 7 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 15 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 13 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 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17 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1) 공유 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 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2)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 요한 인근 토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 현 헹 | 개 정 안 |
| :---: | :---: |

제18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 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 17 조의 규정 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 일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제 3 장 헹정제산 및 보존제산

제19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첵임 공 무원은 관리하는 헹정재산•보존재산 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 여야 한다.

제 20 조(사용 - 수익허가의 제한) (1)행정 재산 - 보존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 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 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2)헹정재산•보존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 - 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제 18 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 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 17 조에 따라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 일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제3장 헹정재산 및 보존재산

제19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공무원은 관리하는 헹정재산•보존재산의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 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 다.

제 20 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1) 행정 재산 - 보존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 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 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2) 행정재산•보존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 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

| 현 헹 |
| :---: |
|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제21조(사용 • 수익허가) 행정재산 • 보존재 |
| 산을 사용 • 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각 |
|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 1. 사용목적 |
| 2. 사용기간 |
| 3. 사용료 |
| 4. 사용료 납부방법 |
| 5. 사용 • 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
| 6. 사용 • 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 |
| 의 사용자 부담 |
| 7. 허가조건 |
| 8. 기타 재산관리관이 필요한 사항 |

제 22 조(행정 재산의 일시 사용 - 수익허가) (1)행정재산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 위 안에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일시 사 용 - 수익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 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저 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의 일 시 사용 - 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별표에서 정한 시설사 용료(이하 이조에서 "사용로" 라 한다)

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 21 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 - 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

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8.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22 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 - 수익허가) (1) 행정재산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 위 안에서 개인이나 단체에게 일시 사 용 - 수익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 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저 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 - 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 기 전까지 별표에서 정한 시설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한다)를 납

| 현 헹 개 정 안 |
| :---: | :---: |

를 납부하여야 한다.
(3)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시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실제 소요 경비는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 수할 수 있다.
(4)국가 • 지방자치단체 • 산업체 • 국가 인증 시험기관 등에서 연수, 시험 등의 목적으로 전체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5)1개월 이상의 장기 사용 시에는 제 2 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 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6)제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 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충청북도교 육청과 산하 각급기관(교육행정기관 을 포함한다) 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 자 하는 경우
2.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활동, 기타 공 공목적 등 건전한 목적으로 일시 사 용하는 경우로써 재산관리관이 사용 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하여야 한다.
(3)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 - 수익허가 시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실제 소요 경비는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 수할 수 있다.
(4)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산업체 - 국가 인증시험기관 등에서 연수•시험 등의 목적으로 전체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5) 1 개월 이상의 장기 사용 시에는 제2 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 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 할 수 있다. (6)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충청북도교 육청과 산하 각급기관(교육행정기관 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 자 하는 경우
2.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활동, 그 밖에 공공목적 등 건전한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로써 재산관리관이 사 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헌 헹 | 개 정 안 |
| :---: | :---: |

경우
(7)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 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 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 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 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 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 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 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 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8)행정재산의 일시 사용 - 수익을 허가 받은 자(이하 의조에서 "허가받은 자"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 를 진다.
4.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재 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 는 허가받은 자가 이를 변상 또는 원 상복구 하여야 한다.

경우
(7)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 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 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 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 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 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 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8)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 - 수익을 허가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 받은 자"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 를 진다.
4.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허 가 받은 자가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 현 헹 |
| :---: |
| 2. 시설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허 가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재산 관리관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 할 수 없다.

제24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재산관리관이 법 제 27 조제 1 항의 규정 에 의하여 행정 - 보존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 2 항과 제 3 항, 제21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 수익 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 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 하여야 한다.
(2) 재산관리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 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 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 거나 제 3 자가 전대 사용하는 헹정 - 보 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 과 - 징수하여야 한다.
(3)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헹정•보존 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 - 수익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 부하고, 제 3 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 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 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2. 시설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나 손해에 대하여는 허가 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재산관 리관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24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 관리) (1)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헹정•보존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 12 조제 2 항과 제 3 항, 제 21 조제 1 항에 따라 사용 - 수익 허가의 대상범위와 허 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헹정• 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 대 사용하는 행정 - 보존재산에 대하여 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 용료를 부과 - 징수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행정•보존재산을 위탁 받은 수탁자가 사용 - 수익허가 받은 재 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 3 자 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 -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헌 헹 | 개 정 안 |
| :---: | :---: |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 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4)법 제 27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 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 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 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 21 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6)제 1 항 내지 제 4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 는 교육감이 직접 시행한다.

제25조(잡종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 26 조 내지 제 37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4 장 잡종제산

## 제 1 절 대 부

제26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 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 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 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과 영 제 21 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6)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 설보수는 교육감이 직접 시행한다.

제25조(잡종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 항은 제 26 조부터 제 37 조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 제4장 잡종재산 <br> 제1절 대부

제26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 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 헌 헹 | 개 정 안 |
| :---: | :---: |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 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 다.

제27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1)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 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 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 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 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 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 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 관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 여야 한다.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 제 4 호, 제 23 조, 제 29 조제 1 항제 7 호 제 30 조, 제 32 조제 3 항, 제 35 조제 2 항, 제 38 조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7조(대부재산의 유싱 및 환수조치) (1)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 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 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 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 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 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 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 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 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 여야 한다.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 제 4 호, 제 23 조, 제 29 조제 1 항제 7 호, 제 30 조, 제 32 조제 3 항, 제 35 조제 2 항, 제 38 조

| 현 헹 | 개 정 안 |
| :---: | :---: |

제 1 항제 25 호，제 39 조제 2 항제 5 호 및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 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9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 매각 대상 등）제 28 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외국인투자촉진법」제 2조제1항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 기업 등＂이라한다）에 대부－매각이 가 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와 같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38 조의 4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 방 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저 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 산업단지，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 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한 법률」 제 2 조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 의 공유재산

4．「외국인투자촉진법」 제 1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외 국 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제 1 항제 25 호，제 39 조제 2 항제 5 호 및 같
은 조 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뱁」을 준용 한다．

제29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제 28 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 업이나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 항제 6 의 2 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 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 38 조의 4 제 2 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나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7 조，제 7 조의 2 및 제 8 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아파 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외국인투자촉진법」 제 18 조에 따 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외국인투 자지역의 공유재산

| 현 헹 | 개 정 안 |
| :---: | :---: |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 1 호 내지 제 5 호에 준하는 사항으 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 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30조(대부료의 요율) (1)영 제31조의 규 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 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 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 채석 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 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 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2)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 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 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 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 로 하는 재산
(3)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 의 25 이상으로 한다.
3.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 유재산

제30조(대부료의 요율) (1)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 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 천분의 50 이상 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 - 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 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 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 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 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 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 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 로 하는 재산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 천분의 25 이상으

| 현 헹 |
| :---: |
| 1．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

2．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교육감이 교육행정목적，교육지원사 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사용되는 경우

4．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 에 필요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는 재산

5．주거용 건물（「건축벱」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 한다．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율은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 천분의 10 이상 으로 할 수 있다．
（4）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 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목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교육기본법」제 11 조에 의거 도가 설립 • 경영하는 도립학교의 학교급

로 한다．
1．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교육감이 교육행정목적，교육지원사 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사용되는 경우

4．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 에 필요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는 재산

5．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의 요율은 연 1 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 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 산평정가격의 1 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 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목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교육기본법」제 11 조에 따라 도가 설립 •경영하는 도립학교의 학교급

| 현 헹 |
| :---: |
| 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 4．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 | 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 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법」제 19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벤처기업집적시 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 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 업시헹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6．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 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 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 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7．「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 3 조 제 1 호 내지 제 3 호 및 제 5 호의 인구 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 제 14 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 전하는 때
8．종업원 50 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 재의 50 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 내 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5）제 1 항 내지 제 4 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교육감은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
개 정 안
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4．영 제29조제 1 항제 7 호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 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 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 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 자가 대부하는 경우
6．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 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 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 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7．「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와 제 5 호의 인 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 14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8．종업원 50 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 자재의 50 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5）제1항부터 제 4 항까지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교육감은 연간 대부료나 사용 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 현 헹 | 개 정 안 |
| :---: | :---: |

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정할 수 있 다．
（6）「페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 법 시행령」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교재산의 대부요율은 당해 폐교재산 평정가격의 1 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32조（토석채취료 등）（1）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 출한 금액의 1 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2）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 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 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다만，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 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3）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로로서 가격평정 조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4）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 서，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평 정가격의 1 천분의 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6）「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 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폐교재 산의 대부료의 요율 해당 폐교재산평정 가격의 1 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32조（토석채취료 등）（1）제30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나 사용 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 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 방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의 1 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2）제 1 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 당 원석의 입방미터 당 반출되는 거래 시가를 말한다．다만，시가적용은 생산 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3）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4）제 3 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 서，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 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토석

| 현 헹 개 정 안 |
| :---: | :---: |

토석의 종류별，용도별 생산비등을 고 려하여 1천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1）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 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 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2）제 1 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 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 출이 불가한 경우에는「건축법」에 의 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지상 2 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 층은 부지평가액의 3 분의 2 나． 2 층은 부지평가액의 2 분의 1

2．지상 3 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 층은 부지평가액의 2 분의 1

나． 2 층은 부지평가액의 3 분의 1
다． 3 층은 부지평가액의 4 분의 1 라． 4 충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 분의 1

의 종류별，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 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1）제30 조에 따른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 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2）제 1 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 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 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55 조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 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 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지상 2 충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 층은 부지평가액의 3 분의 2 나． 2 층은 부지평가액의 2 분의 1

2．지상 3 충 이상의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 층은 부지평가액의 2 분의 1 나． 2 층은 부지평가액의 3 분의 1 다． 3 층은 부지평가액의 4 분의 1 라． 4 충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 분의 1

| 현 헹 | 개 정 안 |
| :---: | :---: |

3. 지상 1 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 층은 부지평가액의 3 분의 1
나. 지하 2 층은 부지평가액의 4 분의 1
다. 지하 3 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 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 층은 부지평가액의 2 분의 1
나. 지하 2 층은 부지평가액의 3 분의 1 다. 지하 3 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 분의 1
(4)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 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5)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 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 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3. 지상 1 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 층은 부지평가액의 3 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 분의 1
다. 지하 3 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 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 층은 부지평가액의 2 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 분의 1
다. 지하 3 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 분의 1
(4) 제3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 을 결정하는 건물과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5)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 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 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 현 헹 | 개 정 안 |
| :---: | :---: |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1）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 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대부료 등＂이 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의 규정 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 하 고 있는 제정경제부장관이 정 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 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 일평균 고용인원이 300 명 이상인 사업

라．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 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 퍼센트인 사업

마．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 의 100 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1）
「외국인투자촉진 법」제 13 조제 8 항과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 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 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나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대부료 등＂이라 한다） 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따 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 는 기획제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 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 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 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 명 이상인 사업

라．전체생산량의 50 퍼센트 이상을 수 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과 원 －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 의 100 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 현 헹 | 개 정 안 |
| :---: | :---: |

바．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 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 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 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관한 법률」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둥을 75 퍼센트 감 면할 수 있다．

가．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 일평균 고용인원이 200 명이상 300 명 미만인 사업

다．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 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 상 100 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 의 75 퍼센트 이상 100 퍼센트 미만 을 수출하는 사업

마．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 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 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 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

바．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 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 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은 경우에는 대부료 둥을 75퍼센트 감 면할 수 있다．

가．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 일 평균 고용 인원이 200명 이상 3 00명 미만인 사업

다．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 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 －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 상 100 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 의 75 퍼센트 이상 100 퍼센트 미만 을 수출하는 사업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 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 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 현 헹 |
| :---: |
| 을 증설하는 경우 |
| 3．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 면할 수 있다．

가．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 일평균 고용인원이 100 명 이상 200 영 미만인 사업

다．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 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 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 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 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 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 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 을 증설하는 경우

사．제 29 조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 3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의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

공장을 증설 하는 경우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 면할 수 있다．

가．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 일평균 고용인원이 100 명 이상 200 명 미만인 사업

다．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 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 －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 상 75 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 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 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 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제 29 조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규정 에 해당하는 경우
（2）「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 현 헹 개 정 안 |
| :---: | :---: |

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 설－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500

2．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1천 분의 300
（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 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3조제 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1．중앙행정기관 ： 100 분의 80
2．기타 공공기관 ： 100 분의 50
제35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신 설＞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 설－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500

2．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1천 분의 300
（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 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 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43조제 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중앙행정기관： 100 분의 80
2．그 밖의 공공기관： 100 분의 50
제35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1）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

로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1．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 공공시설물로서 활 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 는 재산

4．그 밖에 상기 각 호에 준하는 재산 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현 헹 |
| :---: |
| （1）전세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금 | 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 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 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 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2）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대부 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 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 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 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 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3）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 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충청북도교육 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6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영 제16 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전년도 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 분의 10 이 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 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지목 상 전，답을 경작용으로 사

## 용－대부하는 경우：100분의 50

2．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

재산
（2）전세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금 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 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 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 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3）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대부 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 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사용－대부자의 요청이나 귀책사 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4）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6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영 제16 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 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 료나 대부료보다 100 분의 10 이상 증가 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 하는 감액율은 100 분의 70 으로 한다． ＜삭 제＞
＜삭 제 $>$

| 현 헹 | 개 정 안 |
| :---: | :---: |
| 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 다)로 사용 - 대부한 경우 : 100 분 의 45 |  |
| 제37조(대부료 등의 납기) (1)제30조의 규 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 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 수 익허가 기간이 1 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 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 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 일까지로 하며, 1 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 일 이전으로 한다. <br> (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 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 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br> 제 38 조 (대부정리부의 비치) (1)재산관리관 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 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br> (2)제 1 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 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제37조(대부료 등의 납기) (1) 제3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나 사용료의 납 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기 간이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 일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60 일까지로 하며, 1 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 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 일 이전으로 한다. <br>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 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 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br> 제38조(대부정리부의 비치) (1) 재산관리 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 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br> (2) 제 1 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 헌 헹 | 개 정 안 |
| :---: | :---: |

1．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 황의 구분）

2．대부계약 년월일
3．대부받은 자의 주소，성명
4．대부기간
5．재산가격
6．대부요율
7．대부료
8．대부료 납입기일
9．계약 갱신내용
10．기타 필요한 사항

## 제 2 절 매 각

제4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1）영 제 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 의 매각대금을 10 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 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 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 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 지 중 도지사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

1．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 황의 구분）

2．대부계약 연월일
3．대부받은 자의 주소，성명
4．대부기간
5．재산가격
6．대부요율
7．대부료
8．대부료 납입기일
9．계약 갱신내용
10．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2절 매각
제4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1）영 제 39 조제 1 항에 따라 잡종재산의 매각 대금을 10 년 이내의 기간으로 때각대금 의 잔액에 연 4 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 을 매각하는 때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 택 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

| 현 헹 개 정 안 |
| :---: | :---: |

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 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 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 시의 점유•사융자에게 매각하는 때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영세농가 또 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 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2）영 제39조제 1 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 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 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 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3）영 제39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 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 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영 제 38 조제 1 항제 6 호，제 7 호 및 제 12 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교육감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교육감이 계속하여 점 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 2 조제 2 호 에 따른 수급자．영세농가나 저소득 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2）영 제39조제 1 항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가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 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 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 퍼 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 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3）영 제 39 조제 1 항에 따라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 대금의 잔액에 연 6 퍼센트의 이자를 붙 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영 제 38 조제 1 항제 6 호，제 7 호 및 제 12 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교육감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교육감이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 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

| 현 헹 |
| :---: |
|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때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한 법률」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 트형공장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 27 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 단지개 발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 14 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 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 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영 제 39 조제 2 항제 5 호의 규정에 의하 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 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5）영 제 39 조제 2 항 제 1 호 내지 제 4 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 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 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 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 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때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공 장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 발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지방자치단 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 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 각하는 경우
（4）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 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 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 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5）영 제 39 조제 2 항제 1 호부터 제 4 호까 지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 재산의 매각대금을 20 년 이내의 기간으 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

| 현 헹 개 정 안 |
| :---: | :---: |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 41 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 우) 영 제 38 조제 1 항제 23 호에 의한 수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 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 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 분의 1 이상이 동 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 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 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 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 천 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 월30 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 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 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 규 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 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체곱미터를 한

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 우) 영 제38조제 1 항제 23 호에 따른 수의 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삭 제>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 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 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 분의 1 이상이 동 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 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 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 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와 접한 경우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 는 2천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 월 24 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 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 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 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

| 현 헹 |
| :---: |
| 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 매각할 때．다만，다수의 지방자치단 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 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 적이 본 호의 1천제곱미터 또는 2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 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 에서 분할매각 할 수 있으며，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 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 까지 일괄매각 할 수 있다．

5．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 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 제곱미터 이하，시 • 군의 읍－면 지역 1천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 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 각하는 경우．다만，지방자치단체이 외의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 상이어야 한다．

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 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 적이 본 호의 1천제곱미터 또는 2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 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 할 수 있으며，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 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 할 수 있다．

4．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 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 제곱미터 이하，시 • 군의 읍－면 지역 1천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 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 각하는 경우．다만，지방자치단체이 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3절 신탁

| 현 헹 |
| :---: |
| 제42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제 1항의 |
|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 |
| 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 |
| 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 (임 |
| 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
| 구분한다)으로 한다. |

## 제 5 장 공유임야 관리

제 44 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한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 하여야 한다.

## 제 6 장 청사관리

제46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1)교육 감은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 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 정비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2)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 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 신설기관•임차•노후 - 협소 - 위치 부 적당으로 한다.

제 47 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제42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 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 - 부 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 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 으로 한다.

## 제5장 공유임야 관리

제 44 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한정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과 장래 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 제6장 청사관리

제46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1) 교육 감은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및 재원확보 등을 고려 하여 기관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 비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2) 제 1 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 - 도괴위험 - 신설기관 - 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 47 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 현 헹 |
| :---: |
| 연면적의 3 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 |
| 로 한다．다만， 3 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
|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거 |
| 축법」 상의 건폐율이상으로 할 수 있 |
| 다． |

제 48 조（청사의 설계）청사를 신축할 때에 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 안구역을 설정

## 제 7 장 관사관리

제49조（정의）이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교육감－부교육감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

로 한다．다만， 3 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8조（청사의 설계）청사를 신축할 때에 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 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2．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충무시설과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 안구역을 설정

제7장 관사관리
제49조（정의）이 조례에서＂관사＂란 교육 감．부교육감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 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 현 헹 |
| :---: |
| 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
|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
| 구분한다. |
| 1. 급 관사 : 교육감 관사 |
| 2. 2급 관사 : 부교육감 관사, 교육장 관 |
| 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
| 3. 3 급 관사 : 1 급 및 2 급 관사 이외의 |
| 공무원이 사융하기 위한 관사 |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 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 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 급 $\cdot 2$ 급 관사 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 원(이하 "사용자" 라 한다)은 관 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5. 보일러, 전열기구, 가스통, 가스렌지 등 직접 사용 관리하는 시설 또는 기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 호 와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란 교육감 관사를 말한다.
2. "2급 관사"란 부교육감 관사, 교육장 관사와 이에 준하는 관사를 말한다.
3. "3급 관사"란 1 급•2급 관사 이외의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한 관사를 말 한다.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 용허가 신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 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 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 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 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 야 한다.

1. 재산과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과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5. 보일러, 전열기구, 가스통, 가스렌지 등 직접 사용 관리하는 시설이나 기

| 헌 헹 | 개 정 안 |
| :---: | :---: |

구에 대한 사용상의 안전관리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당해 기관의 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한 사 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 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 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 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 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 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 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 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 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응접셋트, 커텐 등 기본 장식물의 구

구에 대한 사용상의 안전관리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해당 기관의 장 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 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2조에 따른 사용자로서

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 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 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과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 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 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응접셋트, 커텐 등 기본 장식물의 구

| 현 헹 개 정 안 |
| :---: | :---: |

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보일러 운영비, 취사용 가스 사용료, 전기요 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 의 공동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 함)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의 규정 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 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소속 공무원이 직접 사용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공 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3.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 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인계 인수 등) (1)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당해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2)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 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

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보일러 운영비, 취사용 가스 사용료, 전기요 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 의 공동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정 함)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에 따른 관 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소속 공무원이 직접 사용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호•감시 둥을 위하여 공무 원이 사용하는 경우
3.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 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5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 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인계 인수 등) (1) 제54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 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일 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2) 제 1 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 는 사용자는 그날 헌재까지 발생한 관

| 현 헹 개 정 안 |
| :---: | :---: |

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 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 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 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 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 괴 또는 훼손 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 한 관사용 비품(시설 • 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 하여는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8 장 보 칙

제61조(변상금의 부과) (1)영 제81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 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2)제 1 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 출할 수 있다.

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 음 사용자나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와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 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 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 한 관사용 비품 (시설 • 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 하여는 제49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 제8장 보칙

제61조(변상금의 부과) (1) 영 제81조제1 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 송하여야 한다.
(2) 제 1 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 출할 수 있다.

| 헌 헹 | 개 정 안 |
| :---: | :---: |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1)영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50 만원 이상 : 6 월 2회 분납
2. 100 만원 이상 : 1 년 4 회 분납
3. 200 만원 이상 : 2 년 분납
4. 300 만원 이상 : 3 년 분납
(2)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 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 급) (1)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 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 을 초과 할 수 없다.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 하여는 필지별로 600 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 분의 10 상당액 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 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한 재산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1) 영 제81 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 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 만원 의상: 6 개월 2 회 분납
2. 100 만원 이상: 1 년 4 회 분납
3. 200 만원 이상: 2 년 분납
4. 300 만원 이상: 3 년 분납
(2)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 자 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 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 급) (1)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 을 초과 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 하여는 필지별로 600 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 분의 10 상당액 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하거나 위조하여 소유 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한 재산

| 현 헹 | 개 정 안 |
| :---: | :---: |

2. 제 1 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 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 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2)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 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 으로 한다.
(3)영 제 85 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 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 여서는 안 된다.

제64조(합필의 신청)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 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 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교육감은 그 소 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2. 제 1 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 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 00 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 00 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2)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둥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 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 으로 한다.
(3) 영 제 85 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 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 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 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합필의 신청)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 지나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 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 청하여야 한다.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교육감은 그 소 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 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

| 현 헹 | 개 정 안 |
| :---: | :--- |
|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 는 해당 토지의 형상과 이용도를 고려하 |
|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이 경우 당해 | 여 분필할 수 있다．이 경우 해당 토지는 |
|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 |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 |
| 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 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 |
|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 | 를 위한 평가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 |
| 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 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 |
|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 인에 의뢰한다． |

[별 표]

##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제22조제2항 관련)

| 현 재 |  |  |  |  |  |  |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 고육시 | 설 일 | 시 사용료 | (제22조 | 제2항 관 |  | [별표] | 고육시 | 설 일 | 사용 | 롤제22조 | 제2항 곤 |  |
| 지역별 | 시설별 |  |  | 기 준 |  | 비고 | 지역 <br> 별 | 시설별 |  | 기 준 |  |  | 비고 |
|  |  |  | 2시균ㄲㅈㅈㅣ | 2시간초과 <br> 사긴이하 | 4시간초가 |  |  |  |  | 2시긴刃⼩지 | 2시간초과 <br> 4시간이하 | 4시간초과 |  |
| 시지역 | 보통교실 |  | 5,000원 | 10,000월 | 15,000원 | 1실 당 | 시지역 | 보통교실 |  | 5,000원 | 10,000원 | 15,000원 | 1실 당 |
|  | 체익관 <br> (강당) | 일시 사용 | 25,000원 | 50,000원 | 100,000원 | $\begin{aligned} & \text { 일시 } \\ & \text { 수용 } \\ & \text { 강ㄴㅇ } \\ & \text { 인원 } \\ & \text { 범위 내 } \end{aligned}$ |  | 체욱관 <br> (강댕) | 일시 사용 | 23,000원 | 50, 000 원 | 100,000원 | $\begin{aligned} & \text { 일시 } \\ & \text { 수용 } \\ & \text { 가능 } \\ & \text { 인원 } \\ & \text { 뱀위 내 } \end{aligned}$ |
|  |  | $\begin{aligned} & \text { 1월 } \\ & \text { 아상 } \\ & \text { 수시 } \\ & \text { 사용 } \end{aligned}$ | 시긴당 5,, 000 원을 가준으로 사용료 징수 |  |  |  |  |  | 1게월 아상 수시 사용 | 시긴당 5,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  |  |  |
|  |  | 일시싸 용 | 25,000원 | 50,000원 | 100,000) 원 | $\begin{aligned} & \text { 일시 } \\ & \text { 수용 } \\ & \text { 가웅 } \\ & \text { 인원 } \\ & \text { 범위 네 } \end{aligned}$ |  | 운동장 | 일사사 <br> 용 | 23,000원 | 50, 000 원 | 100,000원 | $\begin{aligned} & \text { 일시 } \\ & \text { 수용 } \\ & \text { 가능 } \\ & \text { 인원 } \\ & \text { 뱀위 내 } \end{aligned}$ |
|  | 운동장 | $\underline{1}$ 월 아상 수시 사용 | 시잔당 3(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  |  |  |  |  | (1) $\begin{aligned} & \text { 게월ㄹ } \\ & \text { 아상 } \\ & \text { 수시 } \\ & \text { 사용 }\end{aligned}$ | 시긴당 3, 3000 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  |  |  |
| 군지역(시지역의읍면포함) | 보통교실 |  | 2,500원 | 5,000원 | 10,000원 | 1실 당 | $\begin{gathered} \text { 군지역 } \\ \text { (시지 } \\ \text { 엮의 } \\ \text { 읍면 } \\ \text { 포함) } \end{gathered}$ | 보통교실 |  | 2,500월 | 5,000원 | 10,000원 | 1실 당 |
|  | 체육관 <br> (강댕) | 일시 사용 | 15,000원 | 30,000월 | 60, 000 원 | 일시 <br> 수용 <br> 가눙 <br> 인원 <br> 범위 내 |  | 체육관 <br> (강당) | 일시 사용 | 15,000원 | 30, 000 원 | 60,000원 | 일시 <br> 수용 <br> 가능 <br> 인원 <br> 범위 내 |
|  |  | $\begin{aligned} & \text { 1웣 } \\ & \text { 아상 } \\ & \text { 수시 } \\ & \text { 사용 } \end{aligned}$ | 시진당 3(300원을 가준으로 사용료 징수 |  |  |  |  |  | 1게열 <br> 아상 <br> 수시 <br> 사용 | 시긴당 3, 3000원을 가준으로 사용료 징수 |  |  |  |
|  | 운동장 | 일시 | 15,000원 | 30,000월 | 60, 000 원 | $\begin{gathered} \text { 일시 } \\ \text { 수용 } \\ \text { 가능 } \\ \text { 인원 } \\ \text { 범위 네 } \end{gathered}$ |  | 운동장 | 일시 | 15,000)원 | 30, 000 원 | 60,000)월 | 일시 <br> 수용 <br> 가능 <br> 인원 <br> 범위 내 |
|  |  | 1월 아상 수시 사용 | 시진당 20000 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  |  |  |  |  | $\begin{aligned} & \text { 1게원 } \\ & \text { 아상 } \\ & \text { 수시 } \\ & \text { 사용 } \end{aligned}$ | 시진당 2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  |  |  |
|  | 타 | 이 표에서 정히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시시설을 가눈히여 재슨쾬라콴이 정하 여 징수할 수 이씸 |  |  |  |  | 기 타 |  | 이 표에서 정히지 이니한 시설에 대하산ㄴㄴ 위 유사시설을 가눈히여 재샨퀸라귄이 정하 여 징수할 수 있음 |  |  |  |  |

## 관계법령 발췌

## $\square$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6 조(공유재산심의회) (1)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 를 둔다.
(2)제 1 항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2)"행정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 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 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 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제23조(사용료의 조정)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동일한 행정재산등을 1 년 을 초과하여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연간 사

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로보다 100 분의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다.

제33조(대부료의 조정)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동일한 잡종재산을 1 년을 초과하여 계속 대부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 간 대부료보다 100 분의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부료의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다.

## $\square$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공유재산의 구분) 법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사용하기로 결 정한 재산"이라 함은 앞으로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 고,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이라 함은 건설을 위하여 지급한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말한다.

제 16 조(사용료의 조정)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기간 중 전년도 사용로 보다 100 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 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연간 대부 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 보다 100 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 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 $\square$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사용료율과 평가방법) (1)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 장 임대료를 고려하여 당해 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의 요율을 곱한 금 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유 재산의 사용로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 다.<개정 $1989.4 .10,1990.6 .30,1996.6 .15,2000.7 .27,2007.12 .28>$

1. $\sim 3$. 생 략
2. 주거용의 경우: 1 천분의 25 이상
3. 생략
$\square$ 2008년도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기획재정부)
제 7 조(보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재산의 매각기준) (1) 다음 각 호의 토지 로서 재산의 위치와 규모 및 형태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활용할 가치 가 없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지명경쟁•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다.
(2)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000 \mathrm{~m}^{2}$ 이하, 시 이외의 지역에 서는 $2,000 \mathrm{~m}^{2}$ 이하로서 1989 년 1월 24 일 이전부터 국가 이외의 자가 소 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의 토지(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가 제 1 항제 1 호의 면적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제 1 호의 면적 범위 내의 토지를 말한다)를 그 건물 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후에 남는 토지가 제 1 항제 1 호의 영세규모에 해당되고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 전체를 한꺼번에 매각할 수 있다.

## $\square$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1)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 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4.6]

제 7 조의 2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1)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제 7 조제 1 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 지정하며, 시•도지사 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4.6]

## $\square$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 "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 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1)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08.3.21.>
(2)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 44 조, 제 55 조, 제 56 조, 제 58 조, 제 60 조 및 제 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제 80 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 57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 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 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 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 제곱미터
5.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 제곱미터 [전문개정 2008.10.29]

## $\squar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 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제 3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 지역안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 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도시지역
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나．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다．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라．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2．관리지역
가．보전관리지역 ： 20 퍼센트 이하
나．생산관리지역 ： 20 퍼센트 이하
다．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3．농림지역 ： 20 퍼센트 이하
4．자연환경보전지역 ： 20 퍼센트 이하

## $\square$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46 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 구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이전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전공공기관에게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square$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43 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4）법 제 46 조제 1 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공유재산의 임대 료의 100 분의 80 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